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9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:정청래·양이원영·문정복

이용빈 · 윤미향 · 신정훈

조오섭 • 박홍근 • 윤관석

김남국 · 오영환 · 안규백

고영인 · 김민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02호) 및 「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 호 제90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제93조"를 "제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장, 같은 법제93조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"을 "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지방의의 의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등"이라 한다)은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한다.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각각 "지방자치단체장 등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한다. 제7조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한다. 제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·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·도 관할 구역 안의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시·도의회의 의장 소속 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① 제6항에 따라 시·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교육훈련기관 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 중 "시·도지사와 교육감"을 "시·도지사, 교육감 및 시·도의회의 의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"시·도지사와 교육감"을 각각 "시·도지사, 교육감 및 시·도의회의 의장"으로 한다.

제11조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와 교육감"을 "시·도지사, 교육감 및 시·도의회의 의장"으로 한다.

제16조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"를 "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"로 한다.

제17조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전단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·제3항 및 제5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각각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지사 및 교육감"을 "시·도지사, 교육감 및 지방의회의 의장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각각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한다.

제21조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"으로 한다.

제22조 전단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"를 "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"로

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을 "지방자치단체장등 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「지방	제2조(적용 범위)
자치법」 <u>제93조</u> 에 따른 지방	<u>제48</u> 조제1항에 따른
자치단체의 장 및 「지방교육	지방의회의 의장, 같은 법 제93
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	<u>조</u>
따른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(이	
하 "지방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	
적용한다.	
제3조(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의 책무	제3조(<u>지방자치단체장등</u> 의 책무
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	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
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	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
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	지방의회의 의장(이하 "지방자
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	치단체장등"이라 한다)은
행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교육훈련의 의무) ① (생	제4조(교육훈련의 의무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	② 지방자치단체장등
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	
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	

제5조(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)
① 지방자치단체장등
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장등
제6조(자기개발계획의 수립) ①
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장등
제7조(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) <u>지</u>
방자치단체장등
제8조(교육훈련기관) ①~⑤ (현
행과 같음)
⑥ 시·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

<신 설>

제9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시·도 제9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시·도 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 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 장-----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.

- 제10조(교수요원) ①・② (생 | 제10조(교수요원) ①・② (현행과 략)
 -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 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 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 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

방공무원과 해당 <u>시·도</u> 관할 구역 안의 시·군·자치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시·도의회의 의장 소속 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 관에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시·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지<u>사, 교육감 및 시·도의회의 의</u>

같음)

③ 시·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③ 시·도지사, 교육감 및 시·도 의회의 의장-----

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 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.

④ <u>시·도지사와 교육감</u>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11조(교육훈련 기본정책의 통보)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 직임용) ① 시·도지사와 교육감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

·.
④ <u>시·도지사, 교육감 및 시·도</u>
<u> 의회의 의장</u>
ⓒ (청체기 기호)
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교육훈련 기본정책의 통
보)
<u>지방자치단체장등</u>
.
제14조(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
직임용) ① <u>시·도지사, 교육감</u>
및 시·도의회의 의장
<u> </u>
<u>,</u>

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
제16조(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)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지방자치단</u> 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 고할 수 있다.

제17조(교육훈련경비의 부담) 지 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 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야 한다.

- 제18조(교육훈련예산의 계상) ① (생 략)
 - ②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(計上)

	① (현행과 같음)
-11	
제	16조(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
	권고)
	기방자치단
	체장등에게
	<u> </u>
제	17조(교육훈련경비의 부담)
	기방자치단체
	장등
	8 8
제	18조(교육훈련예산의 계상) ①
	(현행과 같음)
	② <u>지방자치단체장등</u>
	<u> </u>

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 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위탁교육훈련) ① <u>지방자</u> 저 <u>치단체의 장</u>은 국내외 위탁교 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 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-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6급 이하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·도지산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교육 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

 제19조(위탁교육훈련) ① <u>지방자</u>
<u> 치단체장등</u>
· ②
2
,
시·도
지사, 교육감 및 지방의회의 의
장

③ 지방자치단체장등

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- ④ (생 략)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 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있다.
- 제20조(직장훈련) ① <u>지방자치단</u> <u>체의 장</u>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 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 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 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 영할 수 있다.

· ④ (현행과 같음)
⑤ 지방자치단체장등
<u>.</u>
Ⅱ20조(직장훈련) ① <u>지방자치단</u>
체장등
② <u>지방자치단체장등</u>
<u>.</u>

제21조(교육훈련의 평가) 교육과	제21조(교육훈련의 평가)
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	
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	
내용·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	
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	
수 있으며, 시정할 필요가 있는	
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<u>지방자</u>	
<u>치단체의 장</u> 에게 그 시정을 요	<u> 자치단체의장등</u>
구할 수 있다.	
제22조(교육훈련의 요청) 교육과	제22조(교육훈련의 요청)
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	
관은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하	
여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</u> 국	<u>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</u>
가정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	
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	
이 경우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</u>	<u>지방자치단체장등은</u>
이에 따라야 한다.	